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32
----------	-------

발의연월일 : 2026. 6. 23.

발 의 자 : 조은희 · 이성권 · 서천호
김용태 · 박상용 · 김재섭
신성범 · 서명옥 · 이만희
박정하 · 윤상현 · 안철수
박성훈 · 박충권 의원
(14인)

제안이유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자신의 한 표를 차질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선거관리기관의 핵심 책무임. 이러한 선거사무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수년간 선거 과정에서 투표관리 부실, 투표지·투표함 관리 논란 등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한 선거관리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유권자가 투표소에 도착하고도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가 지연·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 같은 현장 혼란이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심지어 투표를 포기하

고 떠나는 사례까지 발생함.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 사태임. 선거관리의 가장 기본이 무너지면서,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선거관리기관의 책임성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음.

이 같은 사태를 계기로 현행법상 투표용지 작성 수량, 예비 투표용지 확보 기준, 비상 공급 절차, 투표용지 잔여 수량의 실시간 관리, 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보고·공개 및 사후 검증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음.

이에 투표구별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한 투표용지 작성 기준과 예비 투표용지의 별도 보관 및 비상 공급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투표용지 준비·교부·잔여 수량 등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공개와 국회에 대한 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현저히 저해한 경우 책임조치 및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구별 선거인 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비 투표용지를 별도로 작성·보관하도록 하며, 투표용지 부족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예비 투표용지를 즉시 공급하도록 함(안 제151조의2 신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의 작성·보관·교부, 예비 투표용지의 비상 공급 및 선거관리사고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51조의3 신설).

다. 투표용지 부족, 전기통신장애, 정전 등으로 인한 투표 지연·중단 등 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보고·공개하고, 선거관리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51조의4 신설).

마.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 관계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의무를 위반하여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현저히 저해한 경우 감사·징계요구·고발 등 책임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의로 투표용지 작성·비상 공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151조의4제4항 및 제248조의2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의2부터 제15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1조의2(투표용지 작성 기준 및 비상 공급 절차)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별 선거인 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투표용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여 투표구별 선거인 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비 투표용지를 별도로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투표 진행 상황과 잔여 투표용지 수량을 고려할 때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 투표용지의 비상 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보관 중인 예비 투표용지를 즉시 해당 투표소로 송부하여야 하고,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1조의3(선거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작성·보관·교부 및 예비 투표용지의 비상 공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선거관리시스템(이하 “선거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투표소별 투표용지 준비·교부·잔여 수량

2. 예비 투표용지의 비상 공급 요청 현황 및 예비 투표용지 송부·인계 수량

3. 전기통신장애, 투표 지연 등 선거관리상 사고 발생 사실 및 조치 현황

4.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능

②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잔여 투표용지 수량을 매시간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투표관리관은 예비 투표용지의 비상 공급에 관한 사항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유출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관리시스템의 보안성 및 신뢰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거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1조의4(선거관리사고의 보고·공개 및 조치 등) ① 투표관리관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선거관리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투표용지 부족 또는 부족 우려로 인하여 투표가 지연·중단된 경우
2. 전기통신장애 또는 정전 등으로 투표가 지연·중단된 경우
3. 투표소 개시·마감 또는 투표함 이송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
4. 투표용지, 투표함 또는 선거인명부의 관리에 중대한 이상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사고 중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고에 대하여 사고 발생 사실, 조치 현황 및 향후 대응계획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의 비밀, 투표용지·투표함의 보안 또는 선거질서 유지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세부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거관리 평

가보고서를 선거일 후 90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표용지 준비수량 및 예비 투표용지 사용 현황
 2. 선거관리사고 발생 현황 및 원인
 3. 선거관리사고 대응 경과 및 선거권 보장 조치 현황
 4. 선거관리사고 관련자에 대한 감사·징계 요구 등 책임조치 현황
 5. 선거관리시스템의 운영 결과 및 개선 필요사항
 6. 재발방지 대책 및 법령·제도 개선 필요 사항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1조의2 및 제151조의3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현저히 저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사, 징계의결의 요구,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선거관리 평가보고서 및 제4항에 따른 조치와 관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투표의 비밀, 선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8조의2(선거관리 부실의 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 고의로 제

151조의2를 위반하여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현저히 저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51조의2(투표용지 작성 기준 및 비상 공급 절차)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별 선거인 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투표용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여 투표구별 선거인 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비 투표용지를 별도로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u></p> <p><u>②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투표 진행 상황과 잔여 투표용지 수량을 고려할 때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 투표용지의 비상 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u></p> <p><u>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보관 중인 예비 투표용지를 즉시 해당 투표소로 송부하여야 하고,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u></p>

<신 설>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

제151조의3(선거관리시스템의 구
축 및 운영) 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작성·보
관·교부 및 예비 투표용지의
비상 공급 등을 효율적으로 관
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선거관
리시스템(이하 “선거관리시스
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
여야 한다.

1. 투표소별 투표용지 준비·교
부·잔여 수량
 2. 예비 투표용지의 비상 공급
요청 현황 및 예비 투표용지
송부·인계 수량
 3. 전기통신장애, 투표 지연 등
선거관리상 사고 발생 사실
및 조치 현황
 4.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능
- ②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
원은 잔여 투표용지 수량을 매

시간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
여야 하고, 투표관리관은 예비
투표용지의 비상 공급에 관한
사항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
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
경·훼손·유출 및 파괴, 그 밖
의 위협에 대비한 기술적·물
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선거일 전 30일까
지 선거관리시스템의 보안성
및 신뢰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거관리시
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1조의4(선거관리사고의 보고
·공개 및 조치 등) ① 투표관
리관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신 설>

해당하는 사고(이하 “선거관리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투표용지 부족 또는 부족 우려로 인하여 투표가 지연·중단된 경우

2. 전기통신장애 또는 정전 등으로 투표가 지연·중단된 경우

3. 투표소 개시·마감 또는 투표함 이송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

4. 투표용지, 투표함 또는 선거인명부의 관리에 중대한 이상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사고 중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고에 대하여 사고 발생 사실, 조치 현황 및 향후 대응계획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투

표의 비밀, 투표용지·투표함의 보안 또는 선거질서 유지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세부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거관리 평가보고서를 선거일 후 90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표용지 준비수량 및 예비 투표용지 사용 현황

2. 선거관리사고 발생 현황 및 원인

3. 선거관리사고 대응 경과 및 선거권 보장 조치 현황

4. 선거관리사고 관련자에 대한 감사·징계 요구 등 책임조치 현황

5. 선거관리시스템의 운영 결과 및 개선 필요사항

6. 재발방지 대책 및 법령·제도 개선 필요 사항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

무원(투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1조의2 및 제151조의3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현저히 저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사, 징계의결의 요구,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선거관리 평가보고서 및 제4항에 따른 조치와 관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투표의 비밀, 선거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실히 따라야 한다.

<신 설>

제248조의2(선거관리 부실의 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 고의로 제151조의2를 위반하여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현저히 저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